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37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8. 5. 23.	
판 결 선 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3. 6. 7. 접수 제40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95. 5. 31. 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제2호(소송기록에 기재된 사실)

판사 주은영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와 피고는 본래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이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1993. 6. 7. 이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10,000,000원, 채무자 A, 채권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함)를 취득한 권리자입니다.

2. 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 경위

1) 원고는 1993. 6. 3.경 이진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매대금이 일부 부족하여 피고로부터 금8,000,000원(이하, 이진 차용금채무라고 함)을 차용하였습니다.

2) 원고는 1993. 6. 7. 이진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피고에 대한 이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등기하였습니다.

나. 차용금채무의 변제 등

원고는 1993. 6. 3. 피고로부터 이진 차용금을 빌린 다음, 1995. 5. 31.경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되어 법률상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 피고의 이행지체 등

그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수 차례 이진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잘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알았다며 곧 말소해주겠다고 말만할 뿐 현재까지 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 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진 근저당권말소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목록

1. 강원 영월군 C 임야 1,425m²
2. 강원 영월군 D 임야 3,288m² 끝.